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61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산 담당변호사 김태영

변 론 종 결 2022. 10. 4.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2021. 1. 20. 금전 6,9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20차408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0. 12. 24. C에게 송달되고, 2021. 1. 8. 확정되었다.

나. C은 경기 양평군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E 전 313㎡ 중 289/313 지분, F 도로 32㎡ 중 1/2 지분을 2021. 1. 22. G에게 6,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각 토지 전부(공유자 H 지분 포함)에 설정된 I조합의 근저당권(채무자 C,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권액 3,650만 원을 매도인이 잔금 수령 시에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다. G는 H에게 2021. 1. 22. 계약금 1020만 원과 2021. 1. 29. 잔금 전부를 입금하였다.

라. 피고 명의로 2021. 1. 25. 09:31:47 (계좌번호 1 생략)(예금주 I조합) 계좌로 36,778,240원이 입금되었고, I조합은 같은 날 09:43:49 그 중 36,578,420원을 C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보내 C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처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나머지 20만 원은 법무사 J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무비용으로 소요하였다).

마. H은 2021. 2. 1. 피고에게 ‘B양주E’라고 표시하여 39,880,85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 5호증의 1, 2,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은닉하였으므로, 위 금전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6,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매수인 G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은 적 없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피고에게 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돈을 융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에 H에게서 이를

돌려받은 것뿐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C 지분의 매매대금을 매수인 G에게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H에게서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39,880,850원을 넘는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H에게서 받은 39,880,850원 중 36,778,24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C에게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C과 함께 I조합에 가서 피고 이름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일 뿐 피고가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이 변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 명의만을 이용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C이 I조합의 대출원리금을 미리 갚지 않았다면 어차피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고 이름으로 미리 갚고 나중에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변제금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가 H에게서 받은 돈이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금보다 3,102,610원 많지만, 피고는 위 돈이 K 답 97㎡에 관한 대출금 잔액 상환을 위하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기초사실, 갑 5호증의 1, 을 1, 3호증의 2, 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대표이사, 피고가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L(이하 'L'이라고 한다)과 M가 공유하던 K 토지를 E 등과 동시에 G에게 2,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L을 채무자로 하여 I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 사실, G는 K 토지의 매매대금도 모두 H에게 지급한 사실, L은 2021. 4. 29. I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3,252,143원을 변제하고 2021. 4. 30.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H에게서 받은 3,102,610원이 L 지분의 매매대금이 아닌 C 지분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김수정